

2025년 업무분담 지원금 안내

❖ 육아휴직 근로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이하 육아기단축)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자(육아기 단축자) 1명당 월 20만원 한도 지원

□ 지원 요건

①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을 30일 이상 허용

- 근로자에게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육아기단축의 경우 단축한 시간이 주 10시간~25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

②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(5명 이하)

-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*하고, 증빙자료를 제출(인사명령 문서, 업무분장 등)

* 다만, 육아기단축(육아휴직)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(또는 장려금)의 대상 근로자를 업무분담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↳ 육아기근로시간단축(육아휴직) 급여 및 지원금, 워라밸일자리장려금, 대체인력지원금 등

- 1명의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 근로자 업무를 다수의 동료 근로자가 분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, 단축근로자 1명당 분담근로자 5명까지 지정 가능

③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

-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

□ 지원 내용

①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

-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한도 지원

* (예시) 업무분담자 2명에게 각 15만원씩 합계 30만원 지급→ 사업주에게 20만원 지원

- 동일한 업무분담자를 2명 이상의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음(지원 제외)

* (예시) A가 육아휴직, B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시, C를 2명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각 지정, 각 20만원 씩 40만원을 사업주가 지급 → C의 경우 A 또는 B 중 한 명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20만원 지원 가능

② 업무분담자 지정·금전적 지원 기간 동안 지원

-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

*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업무분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

↳ 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

〈 업무분담자 지정기간에 따른 지원금액 예시〉

업무분담 기간	지원금액	계산식
'25.1.1~3.31 (3개월)	600,000원	· 20만원 × 3개월
'25.1.1~4.2 (3개월 2일)	613,333원	· (1.1~3.30) 600,000원 = 20만원 × 3개월 · (4.1~4.2) 13,333원 = 20만원×(2÷30)
'25.1.15~4.2 (2개월 18일)	526,666원	· (1.15~3.14) 400,000원 = 20만원 × 2개월 · (3.15~4.2) 126,666원 = 20만원×(19÷30)
'25.1.15~5.2 (3개월 19일)	716,129원	· (1.15~4.14) 600,000원 = 20만원 × 3개월 · (4.15~5.2) 116,129원 = 20만원×(18÷31)

*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은 최소 30일 이상 허용해야 하나, 업무분담자에 대한 최소 지정(운용)기간은 없음

❖ 지원제외 사업주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(지자체)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
❖ 지원제외 근로자

-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,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
- 사업주(법인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외국인(거주(F-2)·영주(F-5)·결혼이민자(F-6)는 제외)

□ 기타 유의사항

① 중복지원 등에 따른 지원제외, 감액지원 등
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9조제1항제3호)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 근로자에 대하여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

② 다른 법령에 따라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지원시

-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타 부처,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·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

□ 적용례

- (육아기단축) '24.7.1 시행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
 - * '24.6.30. 이전 육아기단축에 대한 업무분담자 지원제도를 운영한 사업장도 '24.7.1 이후 새로 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 가능
- (육아휴직) '25.1.1 시행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
 - * '24.12.31. 이전에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자 지원제도를 운영한 사업장도 '25.1.1 이후 다시 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 가능

□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

-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* (예시) '24.7.1 업무분담자 지정시 7~9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'24.10.1 이후 신청
 - 지급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(육아기 단축)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- 업무분담자 지정* (인사명령 문서, 업무분장 등) 및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금명세서 등) 제출
 - *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, 업무분담자·지원액 등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